정책연구 연차과제 2025-02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분석

김용탁 · 박종빈 · 한창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집 필 진

- 책임연구자 :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종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한창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사)

머리말

우리 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기업의 경제적 안정화는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 성과와 실질적인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낳은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의 우선구매실적이 장애인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여 제도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김 호 진**

목 차

Abstract ····· 1

연구요약 ····· 3

제1장 서 론 ····· 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1

제2장 이론적 배경 ····· 14
제1절 표준사업장 ····· 14
1. 제도 개요 ····· 14
2.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 15
제2절 타 우선구매제도 ····· 18
1. 중소기업제품 ····· 20
2. 기술개발제품 ····· 21
3. 여성기업제품 ····· 22
4. 창업기업제품 ····· 23
5. 혁신제품 ····· 24
6. 장애인기업제품 ····· 24
7. 중증장애인생산품 ····· 25
8. 인증신제품(NEP) ····· 26

9. 장애예술인 창작품 ····· 27
제3절 국내외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 27
제4절 타 우선구매제도 효과성 관련 연구 ····· 32

제3장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여부 ····· 35
제1절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률 ····· 35
1.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 현황 ····· 35
2.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 현황 ····· 38
3. 타 우선구매제도와의 준수율 비교 ····· 40
제2절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 요인 분석 ····· 41
제3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인식 ····· 44
1. 분석 대상 ····· 44
2.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 ····· 45
3. 우선구매제도의 경영 도움 정도 ····· 46
4. 우선구매제도의 자생력 확보 도움 정도 ····· 50
5. 우선구매제도의 신규 고용창출 도움 정도 ····· 51
6.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 고용안정 도움 정도 ····· 53
제4절 소결 ····· 54

제4장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효과성 분석 ····· 56
제1절 정량적 분석 ····· 56
1.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 분석 ····· 57
2.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 근로자 증대 효과 분석 ····· 59
제2절 정성적 분석 ····· 62
1. 조사개요 ····· 62
2. 분석결과 ····· 62
제3절 소결 ····· 66

제5장 결론 ····· 67
제1절 결론 ····· 67
제2절 정책제언 ····· 70

참고문헌 ····· 74

표목차

〈표 1-1〉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및 준수율 ····· 9
〈표 2-1〉 우선구매제도별 목표비율 비교(2021년 기준) ····· 17
〈표 2-2〉 표준사업장 인증취소업체 수 ····· 17
〈표 2-3〉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 18
〈표 2-4〉 법령상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한 특례 ····· 19
〈표 2-5〉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 20
〈표 2-6〉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21
〈표 2-7〉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 22
〈표 2-8〉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 23
〈표 2-9〉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 25
〈표 2-10〉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 26
〈표 2-11〉 국내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 28
〈표 3-1〉 연도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 35
〈표 3-2〉 연도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 ····· 36
〈표 3-3〉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 37
〈표 3-4〉 연도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 38
〈표 3-5〉 총구매액별 대상기관 분포 ····· 38
〈표 3-6〉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비율 ····· 39
〈표 3-7〉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 40
〈표 3-8〉 2023년 우선구매제도별 준수율 ····· 41
〈표 3-9〉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 패널 로짓 분석(고정효과) · 42
〈표 3-10〉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 패널 로짓 분석(랜덤효과) 43
〈표 3-1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 패널 로짓 분석에 관한 Hausman검정 결과 ···· 44
〈표 3-12〉 우선구매제도 도움 정도 분석 대상 기본정보 ····· 45
〈표 3-13〉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 ····· 46

〈표 3-14〉 우선구매제도의 경영 도움 정도 ····· 50
〈표 3-15〉 우선구매제도의 재무 상태 호전 및 자생력 확보 도움 정도 ····· 51
〈표 3-16〉 우선구매제도의 신규 고용창출 도움 정도 ····· 52
〈표 3-17〉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 고용안정 도움 정도 ····· 53
〈표 4-1〉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성 분석(고정효과) ····· 57
〈표 4-2〉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성 분석(랜덤효과) ····· 58
〈표 4-3〉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성 분석에 관한 Hausman검정 결과 ···· 59
〈표 4-4〉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고정효과) ····· 59
〈표 4-5〉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랜덤효과) ····· 60
〈표 4-6〉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에 관한 Hausman검정 결과 ··· 61
〈표 4-7〉 표준사업장 담당자 의견조사 참여자 ····· 62

그림목차

〔그림 2-1〕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변화 ····· 16
〔그림 2-2〕 미국 AbilityOne 주별 비영리단체 및 매출액 ····· 30
〔그림 2-3〕 미국 AbilityOne 참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 31

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workplace product priority purchase system

Kim, Yong-tak
(Senior Research Fellow, Employment Department Institution, KEAD)
Park Jong-bin
(Research Fellow, Employment Department Institution, KEAD)
Han Chang-Su
(Teacher, Employment Department Institution, KE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stable securing of sales channels for standard workplace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for standard workplaces. To this end, first, previous studies on standard workplaces and other priority purchase systems were reviewed. Second, we used panel logit analysis and standard workplace survey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workplac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and the perception of the standard workplac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Thir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the person in charge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workplac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for standard workplaces has a positive effect on standard workplaces,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lso show that there are various positive effects on standard

workplaces, so it can be said that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for standard workplaces is effect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for standard workpla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purchasing products produced at standard workplaces, to upgrade the online purchasing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motivation for purchasing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ESG values and social influences.

Key words : standard workplace, priority purchase system, effectiveness analysis, withplus

연구요약

본 연구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제도의 안착과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판로확보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사업장 및 타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분석이다. 표준사업장과 국내외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와 유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여부에 관한 분석이다. 최근 5년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실적을 토대로 기관 유형별,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준수율을 분석하고, 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대해 비교하였다. 또한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인식에 관해 분석하였다. 셋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패널 회귀 분석과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0.78%에서 2023년 1.16%로 증가하였으며, 기관 유형으로 봤을 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매비율 및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인의 구매비율 및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총구매액별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봤을 때 총구매액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기관에서 구매비율 및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선구매제도별로 준수율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준수율이 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은 66.1%로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준수율(79.2%)보다는 낮았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56.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우선구매비율과 총구매액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구매액과 기관 유형이 준정부기관인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8.9%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재무 상태 호전 및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37.8%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71.1%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29.6%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52.6%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7.0%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67.1%로 높게 나타났다. 즉,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반적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매출액 증대 효과에 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오래될수록, 표준사업장 업력이 오래될수록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근로자 수 증대 효과에 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소재지가 충청권일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관해 살펴보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 나타난 바를 뒷받침하듯 매출액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유지, 사업체 홍보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홍보 및 우선구매비율의 확대,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은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인식에 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드플러스의 데이터 분석결과 2023년 기준 전체 표준사업장 703개소 중 67.3%인 473개소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로는 더 많은 표준사업장이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에서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제도의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관한 구매접근성을 개선하고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별 상세 스펙 정보, 품질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 인증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납품 실적 및 구매자 후기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위드플러스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정보·인증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드플러스 플랫폼 사용법, 구매계획 수립 방법, 실적 관리 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우수 구매기관의 사례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구매담당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상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 ESG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구매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법적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어, 이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나 ESG 성과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ESG 성과 지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실천한 모범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이하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립을 중시하는 모델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35.4%, 고용률 34.0%, 실업률 3.9%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4.7%, 고용률 63.3%, 실업률 2.1%로 큰 격차를 보인다(이윤지 외, 2024).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의미한다(이수용, 차정훈, 2021).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만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게 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704개소로(일반형 550개소, 자회사형 153개소, 컨소시엄형 1개소), 약 15,915여명의 장애인이 표준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0.4%에 이르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지난 10년 동안 표준사업장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체 수도 증가하였고, 장애인 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며, 공단의 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들이 근로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 등과 같은 사회통합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되었다. 하지만 표준사업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 사업장의 안착, 경영 안정, 판로개척 등과 같은 표준사업장의 질적 성장에 관한 이슈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김용탁, 이은영, 2023)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 극복, 판로개척, 매출 확대 등을 위해 표준사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이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유찬호, 2023).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적극적 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1]을 통해(2012년 12월 18일 개정, 2013년 6월 19일 시행) 도입되었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공공기관은 물품이나 용역의 일정 금액을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2]이나 용역을 우선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

1)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법」에 추가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1% 내에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1% 내에서 정하도록 규율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우선구매해야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은 이보다 더 낮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최초 제도 도입시점인 2014년에는 0.3%였으나, 2020년 0.6%로 한 차례 상향된 후, 2023년 0.8%로 다시 한 차례 상향되었다.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듯이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도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관해 분석해 본 결과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우선구매비율 달성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이 9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별법인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구매액이 가장 높은 공기업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1.51%로 나타났고, 총구매액이 가장 낮은 특별법인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0.11%로 나타났다.

〈표 1-1〉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및 준수율

(단위: 개소, 10억원, %)

구분	개소	총구매액 (A)	표준사업장 구매액(B)	구매율 (A/B*100)	우선구매 준수율
국가기관	57	8,901.31	71.55	0.48	28.1
지방자치단체	243	9,332.63	190.37	2.04	75.3
교육청	17	10,150.43	139.60	1.38	47.1
공기업	32	15,149.30	229.39	1.51	87.5
준정부기관	55	5,686.59	86.85	1.53	94.5
기타공공기관	260	8,901.31	71.55	0.80	64.6
지방공기업	159	3,023.65	24.14	0.80	64.2
지방의료원	36	343.86	4.91	1.43	38.9
특별법인	6	249.41	0.27	0.11	16.7
합계	865	72,825.22	842.47	1.16	66.1

자료: 고용노동부(2024)

2)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및 용역으로,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단순가공, 포장, 품질관리, 유통, 단기용역 등)를 모두 포함(고용노동부, 2019)

공공기관에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표준사업장에 있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의 매출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제기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언급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과연 제도의 취지대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제도의 안착,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판로확보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표준사업장의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증진 및 처우개선,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다면적 효과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사업장 및 타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와 타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와 비교적 가장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다.

둘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여부에 관해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실적을 토대로 기관유형별,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준수율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과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매년 공공기관에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실적을 패널데이터로 만들어서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인식에 관해 분석하였다.

셋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해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 위드플러스의 데이터 패널데이터로 만들어서 패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준사업장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로는 표준사업장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표준사업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혜원과 전영환(2016), 김원호와 이금진(2017), 유병연(2017), 김원호(2018), 이수용과 차정훈(2021), 김용탁과 이은영(202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박혜원과 전영환(2016)은 표준사업장 사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적절성,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으로 표준사업장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비교적 모든 측면에서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표준사업장 사업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표준사업장 설립,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우선구매비율 상향 및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비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표준사업장 업종의 다양화, 표준사업장 운영관리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원호와 이금진(2017)은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응답한 표준사업장의 70.7%가 공공기관 납품 금액이 평균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에 확대하고 싶으나 잘 안됨'이라는 의견이 57.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공공기관에 확대하고 싶으나 잘 안됨'이라는 의견이 64.9%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실적이 낮은 이유로는 '인지도 부족'이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도이행 의지 낮음'(37.1%)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생산품 및 홍보 및 이행 독려'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확대'(40.5%), '우선구매율 상향 조정'(40.0%) 등의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유병연(2017)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 친화적인 표준사업장 육성,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심과 노력 증진, 우선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이행 조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원호(2018)는 표준사업장 사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고용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기간에 대한 검토 필요, 공단 훈련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려한 근로환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 표준사업장 산업 분야 확대, 표준사업장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우선구매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수용과 차정훈(2021)은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확대와 같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용탁과 이은영(2023)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본 경험이 있는 표준사업장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기존의 판매 및 유통경로를 이용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판로 확대 및 재무 상태 호전, 기업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1.1%,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2.6%로 나타났으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응답이 61.7%(1순위+2순위 종합)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구매비율 조정과 같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표준사업장

1. 제도 개요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육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다.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고용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300명 미만인 경우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수의 10%에 5명을 더한 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에 20명을 더한 인원을 고용하여야만 한다.

표준사업장 요건충족 여부를 공단이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게 된다.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게 되면 '표준사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모기업 고용인원 산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준사업장의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일반형 표준사업장 외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이 존재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기본적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3]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으로 산입하게 되나, 경증남성 1명은 0.5명으로 간주한다.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표준사업장이다.

2.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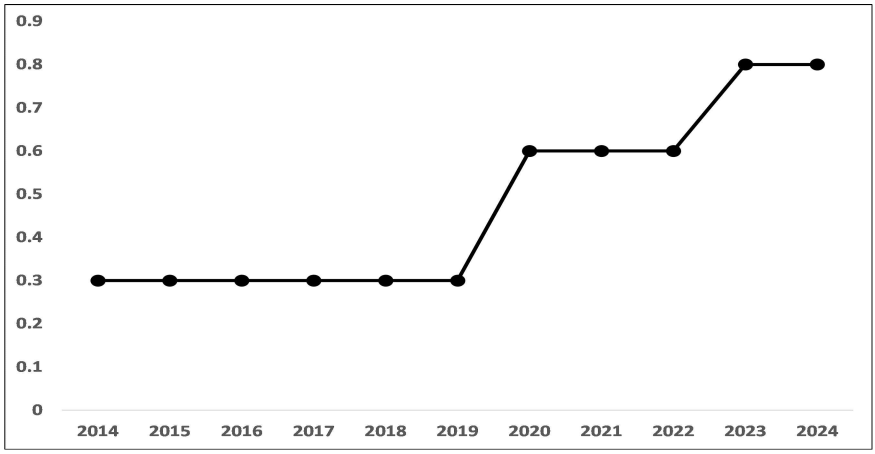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구매는 학술상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법률상 용어로 정립된 개념이다(유병연, 2017). 우선구매제도는 적극적 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로부터 유래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개선조치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따라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이 관련분야에서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다(나운환, 2014). 적극적 개선조치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데,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도 적극적 개선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게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4]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

3)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통액의 50%를 초과소유

매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총구매액의 0.8%를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만 한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최초 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2014년에 고용노동부 고시(2013-29호)를 통해 우선구매비율을 0.3%로 규율하였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2019-71호)를 통해 2020년부터 우선구매비율이 0.6%로 한차례 상향되었고, 고용노동부 고시(2022-136호)를 통해 2023년부터 우선구매비율이 0.8%로 다시 한번 상향됐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변화



4) 제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단순가공, 포장, ,품질관리, 유통, 단기용역 등)를 의미

2023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비율이 상향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유사 우선구매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2023년 0.8%로 상향되기 전까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목표비율은 0.6%였으며, 이는 유사 우선구매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했다(표 2-1 참조).

〈표 2-1〉 우선구매제도별 목표비율 비교(2021년 기준)

구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목표비율	1% 이상	1%이상	0.6% 이상	5% 이상	3% 이상
2021년 구매액	7,044억원	2.4조원	5,927억원	12조원	1.8조원

두 번째로 표준사업장의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4년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후 2017년 우선구매제도 준수여부가 정부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구매실적을 공표하기 시작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표준사업장 물품구매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진포기 또는 부도·폐업으로 인해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는 업체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표준사업장 인증취소업체 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 수	28	22	15	26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 국제정서의 악화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판로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 번째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매량 증가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제도의 효과와 표준사업장의 판매액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의 상향이 필요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단에 제출해야만 하며,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국가기관	55	0.42	56	0.50	57	0.48
지자체	243	1.52	243	1.68	243	2.04
시도교육청	17	0.79	17	0.86	17	1.38
공기업	36	1.14	36	1.35	32	1.51
준정부기관	94	1.46	94	1.48	55	1.53
기타공공기관	218	0.49	220	0.59	260	0.80
지방공기업	156	0.58	159	0.63	159	0.80
특별법인	6	0.03	6	0.01	6	0.11
지방의료원	36	1.55	36	1.40	36	1.43
합계	861	0.92	867	1.01	865	1.16

자료: 기관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각 년도

제2절 타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제도는 공익적 목적에 근거해 공공부문이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경쟁열위에 있는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유병연, 2017)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대상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이하 조달특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 잡은 조달특례는 그간 특정단체·산업의 육성 등 개별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게다가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2018년 약 40.1만개소에서 2023년 약 57.2만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도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획재정부, 2024), 우선구매제도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우선구매제도를 의무적으로 규율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한 특례는 앞서 언급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제외하고 총 9종이 있다(표 2-4 참조).

〈표 2-4〉 법령상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한 특례

구분	주요 내용	근거법률	소관부처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의 50%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제품	물품 5%, 용역 5%, 공사 3%	「여성기업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제품	총구매액의 8% 이상	「중소기업창업법」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물품구매액의 1~2% 이상	「조달사업법」	조달청
장애인기업제품	물품구매액의 1%	「장애인기업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용역 구매액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보건복지부
인증신제품(NEP)	해당 물품구매액의 20%	「산업기술혁신법」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예술인창작품	창작물 구매총액의 3%	「장애예술인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주. 1)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2) 「여성기업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3)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약칭
4) 「조달사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
5)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약칭
6)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약칭
7) 「산업기술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약칭
8)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1.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있다.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국가기관	47	64.98	47	57.10	48	64.40
지자체	243	86.16	243	84.82	243	84.02
시도교육청	17	90.93	17	84.38	17	84.19
공기업	37	71.44	37	73.92	37	74.15
준정부기관	96	77.32	94	77.07	94	76.51
기타공공기관	217	77.70	217	71.84	214	73.38
지방공기업	151	77.33	160	79.03	160	81.75
특별법인	6	51.28	6	41.45	6	56.54
지방의료원	35	79.59	35	79.96	35	85.43
합계	849	77.63	856	75.74	854	77.44

자료: 공공기관 연도별 구매실적 각 년도

2. 기술개발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판로지원법」에 있다. 「판로지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국가기관	47	12.68	47	16.34	48	14.51
지자체	243	22.07	243	20.40	243	22.51
시도교육청	17	21.01	17	27.19	17	26.15
공기업	37	16.59	37	16.50	37	17.58
준정부기관	96	19.46	94	25.26	94	21.85
기타공공기관	217	3.84	217	3.89	214	4.37
지방공기업	151	15.86	160	17.48	160	15.25
특별법인	6	3.22	6	18.94	6	3.81
지방의료원	35	2.08	35	2.25	35	2.35
합계	849	16.91	856	18.51	854	18.72

자료: 공공기관 연도별 구매실적 각 년도

3. 여성기업제품

여싱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에 있다. 「여성기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2항에서는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기업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판로지원법」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수	물품	용역	공사	기관수	물품	용역	공사	기관수	물품	용역	공사
국가기관	47	4.32	5.63	5.82	47	4.76	5.64	6.89	48	11.24	8.98	10.41
지자체	243	14.32	10.88	11.24	243	8.97	6.65	6.67	243	16.99	13.78	14.96
시도교육청	17	10.17	10.56	9.75	17	10.41	13.28	12.61	17	16.42	16.73	16.76
공기업	37	9.06	3.99	4.94	37	7.73	4.66	4.72	37	10.72	6.69	6.54
준정부기관	96	12.46	8.82	6.41	94	12.51	8.87	6.28	94	16.83	11.79	8.32
기타공공기관	217	5.19	7.89	9.71	217	5.41	7.57	8.62	214	8.16	11.37	14.12
지방공기업	151	11.21	8.67	6.64	160	9.95	9.08	7.17	160	13.10	12.02	9.89
특별법인	6	3.34	4.78	2.50	6	4.07	2.28	2.48	6	5.76	7.25	14.19
지방의료원	35	7.36	8.19	11.49	35	6.38	4.04	6.64	35	7.36	5.94	7.70
합계	849	9.33	7.74	7.86	856	9.59	8.39	8.57	854	13.90	11.57	11.72

자료: 공공기관 연도별 구매실적 각 년도

4. 창업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에 있다. 「중소기업창업법」 제38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창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창업기업법 시행령」 재14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8>와 같다.

〈표 2-8〉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국가기관	47	1.27	47	1.42	48	2.28
지자체	243	2.62	243	5.60	243	2.84
시도교육청	17	1.28	17	3.36	17	4.02
공기업	37	0.92	37	3.26	37	2.10
준정부기관	96	2.61	94	6.42	94	5.60
기타공공기관	217	1.93	217	2.94	214	3.60
지방공기업	151	1.20	160	3.78	160	4.47
특별법인	6	0.30	6	0.53	6	1.41
지방의료원	35	2.13	35	1.40	35	1.69
합계	849	1.75	856	3.91	854	3.01

자료: 공공기관 연도별 구매실적 각 년도

5. 혁신제품

혁신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있다.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서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조달사업법」 제5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에 있다.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2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2제3항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의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표 2-9〉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국가기관	47	1.34	47	1.24	48	1.64
지자체	243	4.13	243	4.79	243	3.22
시도교육청	17	2.48	17	2.21	17	2.30
공기업	37	3.41	37	2.75	37	2.76
준정부기관	96	5.57	94	5.29	94	5.11
기타공공기관	217	0.96	217	0.87	214	0.91
지방공기업	151	2.30	160	2.90	160	3.19
특별법인	6	0.53	6	0.46	6	0.67
지방의료원	35	0.77	35	1.30	35	1.24
합계	849	2.80	856	2.85	854	2.57

자료: 공공기관 연도별 구매실적 각 년도

7.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목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엑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최근 3년간 기관 유형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단위: 개소, %)

	2021년		2022년		2023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국가기관	58	0.76	59	0.92	60	0.88
지자체	245	0.98	245	0.89	245	0.91
시도교육청	193	1.06	193	0.96	193	1.08
공기업	36	1.10	36	1.33	32	1.56
준정부기관	95	1.61	94	1.52	55	1.52
기타공공기관	218	0.45	220	0.47	260	0.59
지방공기업	156	1.99	159	1.42	159	1.43
특별법인	6	0.18	6	0.16	6	0.42
지방의료원	30	0.71	30	0.58	30	1.43
합계	1,037	0.99	1,042	1.01	1,040	1.07

자료: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각 년도

8. 인증신제품(NEP)

인증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이하 'NEP')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에 있다. 「산업기술

혁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인증신제품(NEP) 구매목표비율은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로 규율하고 있다.

9. 장애예술인 창작품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예술인지원법」)에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품 구매목표비율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제3절 국내외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국내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와 비교해 보았다(표 2-11 참조). 장애인 관련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기업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들 수 있다.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장애인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기관은 표준사업장은 공단,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30%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이지만,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증업체수를 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은 703개소, 장애인기업은 7,772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770개소로 장애인기업이 가장 많고, 표준사업장이 가장 적다. 우선구매목표비율은 표준사업장은 총 구매액의 0.8%,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각각 1.0%이다. 관련법조항을 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각의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인증에 대한 소관부처, 법적 기준이 다르며, 의무구매비율 또한 각 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국내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구분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시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표 2-11〉 국내 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계속)

구분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대상 기업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30%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중증장애인 비율(규모별 차등), 최저임금 지급,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장애인 소유 또는 경영 기업 (장애인근로자 30% 이상(단, 소기업 제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근로자 70%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생산공장 유무 등)
인증 업체수		703개 (24년 6월)	7,772개 (23년 6월)	770개 (23년 6월)
우선구매목표비율	목표비율	총구매액 0.8% 이상 (물품, 용역 합계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총구매액 1% 이상 (물품, 용역, 공사 합계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총구매액 1% 이상 (물품, 용역 합계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관련법조항	(의무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비율명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시	(의무부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비율명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의무부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비율명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다음으로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AbilityOne Program'(이하 'AbilityOne')을 들 수 있다. AbilityOne은 미국에서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장 큰 고용처 중 하나로 42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가 이들을 고용하여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bilityOne은 미국 AbilityOne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미국 시각장애인 산업협회(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및 SourceAmerica®의 지원을 받는다. AbilityOne의 미션은 미국에서 직업 참여가 낮은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필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연방정부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AbilityOne은 약 2,500명 이상의 퇴역군인을 포함하여 37,00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3년 회계연도 기준 40억 달러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 연방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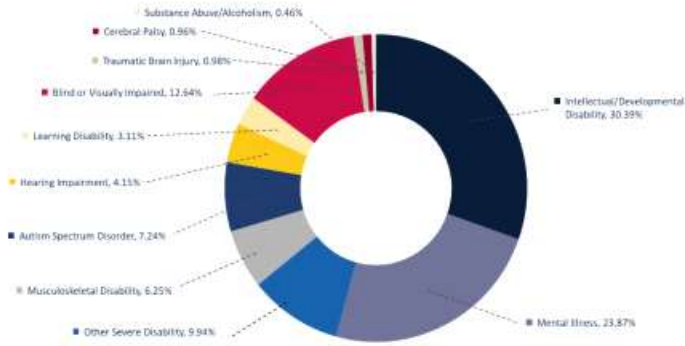
〔그림 2-2〕 미국 AbilityOne 주별 비영리단체 및 매출액



자료: AbilityOne Commission(2024).

AbilityOne에 참여한 장애인의 유형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30.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정신장애(23.87%), 시각장애(12.6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 미국 AbilityOne 참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자료: AbilityOne Commission(2024).

AbilityOne은 1938년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8년 6월 25일 와그너-오데이 법에 서명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의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생산품 구매위원회(Committee on Purchases of Blind-Made Products)를 설립하였고, 이게 이후 AbilityOne 위원회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2016년 AbilityOne 위원회는 모든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저임금 지지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AbilityOne 내 계약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 발간된 AbilityOne 위원회의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을 확대하기 위하여 AbilityOne을 혁신, 두 번째로는 AbilityOne에서 좋은 일자리[5]와 최적의 일자리를 발굴·홍보·지원, 세 번째로

5) AbilityOne에서 보고 있는 좋은 일자리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를 이야기함 (AbilityOne Commission, 2022)
① 장애인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과 복리후생이 제공되는 경우,
② AbilityOne에 참여한 개인이 노동법에 보장을 받는 경우,
③ 직무가 개인의 관심 및 기술에 부합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경우,
④ 개인의 경력 발전을 돕기 위해 고안된 개인중심의 고용계획이 있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승진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는 AbilityOne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결과를 보장, 마지막으로는 AbilityOne 안팎에서 시각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AbilityOne을 통해 7억 3,190만 달러가 집행됐으며, AbilityOne에 참여한 장애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7.58달러, 일자리당 비용[6]은 35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AbilityOne Commission, 2024).

제4절 타 우선구매제도 효과성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타 우선구매제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해 다룬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나운환(2014), 이준우 외(2019), 송창근(2023), 신현욱(202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2)의 연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생산시설의 매출액과 생산시설의 평균 생산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장애인의 고용 안정화 및 임금상승,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직무숙련을 통한 경쟁고용시장으로의 전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편익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근로장애인 관점에서 B/C비율은 7.99, 사회적 관점에서 B/C비율은 8.43, 공공기관 관점에서 B/C비율은 1.01로 순편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운환(2014)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y)의 관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직업재활시설의 마케팅활동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AbilityOne 위원회의 예산 약 1,312만 4천달러를 AbilityOne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 36,600으로 나눈 결과

그러나 미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행장치, 추진체계, 계약제도, 생산품 시설의 지원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준우 외(2019)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우선구매제도의 이해당사자를 중증장애인, 장애인 가족, 생산(판매)시설, 공공기관, 사회 및 국가로 설정하여 14개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소득 증대, 직업능력 및 자기개발,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선과 그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판매)시설에는 직업능력 및 자기개발,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는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공유 가치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및 국가에는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창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투자수익(Social Return On Investment)은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근(2023)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근로자 측면에서 소득증가, 사회적 유대관계 개선, 심리적 안정, 신체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 가족 측면에서 가구소득 증가, 긍정적인 가족관

계 형성, 가족구성원의 보육으로부터의 일정 부분 해방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 측면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판로확보, 매출 향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제고, 장애인 일자리 장출, 사회보장비용 감수, 세수 증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욱(2023)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의 성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시설은 근로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매출액 및 운영수익금을 증가시키기는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직업재활시설의 일자리 및 매출 관련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제 3 장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여부

제1절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이행률

먼저 표준사업장 구매실적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2019년까지 0.3%였으나, 2020년부터 0.6%로 한 차례 상향됐고, 2023년 0.8%로 또 한 차례 상향됐다. 우선구매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연도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	표준사업장 총구매액	구매비율
2019년	51,314,531	399,397	0.78
2020년	60,535,088	551,824	0.91
2021년	64,416,749	593,006	0.92
2022년	70,599,814	709,992	1.01
2023년	72,825,220	842,467	1.1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1.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 현황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등이 해당한다. 대상 기관의 유형별 분포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기타공공기관이 가장 많으며, 특별법인이 가장 적다.

〈표 3-2〉 연도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

(단위: 개소,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기관	54 (6.4)	55 (6.5)	55 (6.4)	56 (6.5)	57 (6.6)
자치단체	243 (28.8)	243 (28.6)	243 (28.2)	243 (28.0)	243 (28.1)
교육청	17 (2.0)	17 (2.0)	17 (2.0)	17 (2.0)	17 (2.0)
공기업	36 (4.3)	36 (4.2)	36 (4.2)	36 (4.2)	32 (3.7)
준정부기관	93 (11.0)	95 (11.2)	94 (10.9)	94 (10.8)	55 (6.4)
기타공공기관	209 (24.8)	209 (24.6)	218 (25.3)	220 (25.4)	260 (30.1)
지방공기업	151 (17.9)	152 (17.9)	156 (18.1)	159 (18.3)	159 (18.4)
지방의료원	34 (4.0)	36 (4.2)	36 (4.2)	36 (4.2)	36 (4.2)
특별법인	6 (0.7)	6 (0.7)	6 (0.7)	6 (0.7)	6 (0.7)
계	843	849	861	867	865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고시 각 년도

연도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기관	0.43	0.41	0.42	0.50	0.48
자치단체	1.36	1.50	1.52	1.68	2.04
교육청	0.48	0.81	0.79	0.86	1.38
공기업	0.88	0.97	1.14	1.35	1.51
준정부기관	1.07	1.29	1.46	1.48	1.53
기타공공기관	0.40	0.82	0.49	0.59	0.80
지방공기업	1.14	0.98	0.58	0.63	0.80
지방의료원	0.61	0.96	1.55	1.40	1.43
특별법인	0.07	0.08	0.03	0.01	0.11
평균	0.78	0.91	0.92	1.01	1.16

주. 2019년 지방의료원 3개소, 2020년 자치단체 1개소 실적 미제출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고시 각 년도

기관 유형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다음의 <표 3-4>와 같다. 기관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준수율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준수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준수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준수율은 감소 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의 준수율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90.0% 이상으로 나타나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의 준수율은 감소 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준수율은 감소 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준수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3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인의 준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4〉 연도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기관	64.8	38.2	45.5	33.9	28.1
자치단체	86.4	77.0	83.5	74.5	75.3
교육청	52.9	35.3	41.2	23.5	47.1
공기업	83.3	83.3	80.6	72.2	87.5
준정부기관	94.6	93.7	94.7	84.0	94.5
기타공공기관	65.6	55.0	56.9	56.4	64.6
지방공기업	69.5	60.5	58.3	50.3	64.2
지방의료원	54.8	55.6	55.6	50.0	38.9
특별법인	16.7	16.7	16.7	16.7	16.7
평균	75.2	66.1	68.4	61.4	66.1

주. 2019년 지방의료원 3개소, 2020년 자치단체 1개소 실적 미제출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고시 각 년도

2.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 현황

다음으로 기관의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구매액별 기관의 분포는 다음의 <표 3-5>와 같다. 총구매액이 100억원 ~ 500억원 미만인 기관이 가장 많으며, 총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기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총구매액별 대상기관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0억원 미만	45 (5.4)	47 (5.5)	51 (5.9)	38 (4.4)	25 (2.9)
10억원 ~ 50억원 미만	179 (21.3)	170 (20.0)	163 (18.9)	152 (17.5)	160 (18.5)
50억원 ~ 100억원 미만	99 (11.8)	96 (11.3)	102 (11.8)	108 (12.5)	99 (11.4)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51 (41.8)	352 (41.5)	348 (40.4)	352 (40.6)	371 (42.9)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73 (8.7)	80 (9.4)	93 (10.8)	100 (11.5)	99 (11.4)
1,000억원 이상	93 (11.1)	104 (11.2)	104 (12.1)	117 (13.5)	111 (12.8)
계	840 (100.0)	849 (100.0)	861 (100.0)	867 (100.0)	865 (100.0)

주. 2019년 지방의료원 3개소, 2020년 자치단체 1개소 실적 미제출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고시 각 년도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구매액 10억원 미만 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10억원 ~ 50억원 미만 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50억원 ~ 100억원 미만 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100억원 ~ 500억원 미만 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1,000억원 이상 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0억원 미만	3.22	1.93	1.70	2.71	1.66
10억원 ~ 50억원 미만	1.77	1.82	1.83	1.73	1.88
50억원 ~ 100억원 미만	1.64	1.97	1.80	1.52	2.25
100억원 ~ 500억원 미만	1.28	1.42	1.61	1.66	1.7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0.92	1.07	1.13	1.22	1.50
1,000억원 이상	0.62	0.78	0.75	0.87	1.01
평균	0.78	0.91	0.92	1.01	1.16

주. 2019년 지방의료원 3개소, 2020년 자치단체 1개소 실적 미제출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고시 각 년도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다음의 <표 3-7>과 같다. 총구매액 10억원 미만 기관의 준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10억원 ~ 50억원 미만 기관의 준수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50억원 ~ 100억원 미만 기관의 준수율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 500억원 미만 기관의 준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기관의 준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 기관의 준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총구매액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0억원 미만	84.4	83.0	68.6	71.1	68.0
10억원 ~ 50억원 미만	79.9	75.3	74.8	67.8	71.9
50억원 ~ 100억원 미만	71.7	67.7	70.6	62.0	71.7
100억원 ~ 500억원 미만	78.6	66.8	73.3	67.9	67.4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67.1	65.0	62.4	47.0	65.7
1,000억원 이상	59.1	40.4	45.2	41.9	48.6
평균	75.2	66.1	68.4	61.4	66.1

주. 2019년 지방의료원 3개소, 2020년 자치단체 1개소 실적 미제출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고시 각 년도

3. 타 우선구매제도와의 준수율 비교

2023년 기준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준수율과 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을 비교해 보았다(표 3-8 참조). 우선구매제도 중 준수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준수율이며, 평균 준수율은 98.5%로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제품 중 공사 준수율이 90.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물품이나 용역 준수율도 8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제품 준수율은 79.2%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준수율은 56.3%로 나타났고, 창업기업 준수율은 2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준수율은 장애인기업보다는 낮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2023년 우선구매제도별 준수율

(단위: %)

구분	표준사업장 구매 준수율	중소기업 구매 준수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구매 준수율	창업기업 구매 준수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준수율
			물품 준수율	용역 준수율	공사 준수율			
국가기관	28.1	89.6	77.1	56.3	89.4	52.1	10.4	53.3
자치단체	75.3	100.0	98.8	97.1	100.0	94.2	2.9	36.3
교육청	47.1	100.0	100.0	100.0	100.0	100.0	11.8	48.2
공기업	87.5	100.0	94.6	64.9	83.3	86.5	13.5	75.0
준정부기관	94.5	100.0	100.0	94.7	96.4	94.7	74.5	90.9
기타공공기관	64.6	97.7	76.6	71.4	82.2	64.0	43.5	58.1
지방공기업	64.2	98.8	93.8	82.5	87.9	79.4	38.8	83.0
지방의료원	38.9	100.0	62.9	41.2	66.7	48.6	0.0	36.7
특별법인	16.7	83.3	50.0	50.0	60.0	50.0	0.0	50.0
평균	66.1	98.5	89.2	81.5	90.4	79.2	28.6	56.3

자료.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고시(2024)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2023년 공공기관 구매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 공고(2024)

제2절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 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 로짓 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통해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패널 로짓 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이고 관측치가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패널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실적자료이다. 구매실적자료에는 각 연도별 기관의 총구매액, 표

준사업장 구매액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연도별 총구매액과 표준사업장 구매액을 통해 준수 여부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기관별로 연도별 준수 여부의 변화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에 관해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9>과 같다. 분석 결과 우선구매비율과 총구매액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우선구매비율과 총구매액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고,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선구매비율이 낮을수록, 총구매액이 낮을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은 높아지며, 표준사업장 구매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은 높아진다.

〈표 3-9〉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 패널 로짓 분석(고정효과)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우선구매비율	-21.7315	2.812853	-7.73	0.000	-27.2446	-16.2184
총구매액	-12.4636	1.577507	-7.9	0.000	-15.5554	-9.37173
표준사업장 구매액	12.9172	1.570883	8.22	0.000	9.838322	15.99607

주: 총구매액과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음

다음으로 랜덤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0>과 같다. 분석 결과 우선구매비율과 총구매액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서는 준정부기관이 우선구매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우선구매비율과 총구매액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고, 표준사업장 구매액과 준정부기관은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선구매비율이 낮을수록, 총구매액이 낮을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은 높아지며, 표준사업장 구매액이 높을수록, 국가기관에 비해 준정부기관일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이 높아진다.

〈표 3-10〉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 패널 로짓 분석(랜덤효과)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우선구매비율	-24.5089	1.584176	-15.47	.000	-27.6139	-21.404
총구매액	-14.6642	0.882802	-16.61	.000	-16.3944	-12.9339
표준사업장 구매액	14.72346	0.884367	16.65	.000	12.99013	16.45678
지방자치단체	-0.51586	0.404315	-1.28	.202	-1.30831	0.276579
교육청	-0.89311	0.545711	-1.64	.102	-1.96269	0.176463
공기업	-0.44832	0.644855	-0.7	.487	-1.71221	0.815573
준정부기관	2.134001	0.910029	2.34	.019	0.350377	3.917624
기타공공기관	-0.27889	0.434431	-0.64	.521	-1.13036	0.572579
지방공기업	-0.4384	0.459027	-0.96	.340	-1.33807	0.46128
지방의료원	0.152844	0.829586	0.18	.854	-1.47311	1.778803
특수법인	-0.18328	1.621945	-0.11	.910	-3.36224	2.995672
_cons	91.5309	5.683323	16.11	.000	80.39179	102.67

주. 1) 총구매액과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음
2) 기관유형 준거변수: 국가기관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은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Hausmna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랜덤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이며, 대립가설은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이다. 그리고 Hausman 검정은 p-value를 통해 해석하게 되는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반대로, p-value가 0.05 이상인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랜덤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에 따라 Hausmna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1>에 제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 p-value가 0.05 이상(p=.385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랜덤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앞서 랜덤효과 모형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우선구매비율이 낮을수록, 총구매액이 낮을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은 높아지며, 표준사업장 구매액이 높을수록, 국가기관에 비해 준정부기관일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표 3-1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 여부 패널 로짓 분석에 관한 Hausman검정 결과

	(b) 고정효과 모형	(B) 랜덤효과 모형	(b-B) Difference	sqrt (diag(V_b-V_B)) S.E.
우선구매비율	-21.73148	-24.50894	2.777452	2.324334
총구매액	-12.46358	-14.66415	2.200571	1.307359
표준사업장 구매액	12.9172	14.72346	-1.806262	1.298295
Chi-sq	3.04			
Prob	.3853			

제3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인식

1. 분석 대상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김용탁과 이은영(2023)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raw-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업체는 주요 응답에 무응답을 제외한 총 368개소이다.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66.3%로 비제조업(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는 비수도권이 54.6%로 수도권(45.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연도는 2020년 이전이 63.0%로 2021년 이후(3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은 10억 이상~50억 미만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억 미만(31.0%), 100억 이상(14.9%), 50억 이상~100억 미만(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50인 미만이 84.8%로 50인 이상(15.2%)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12 참조).

〈표 3-12〉 우선구매제도 도움 정도 분석 대상 기본정보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유형	제조업	244	66.3
	비제조업	124	33.7
소재지	수도권	167	45.4
	비수도권	201	54.6
인증연도	2020년 이전	232	63.0
	2021년 이후	136	37.0
매출액	10억 미만	114	31.0
	10억~50억 미만	146	39.7
	50억~100억 미만	53	14.4
	100억 이상	55	14.9
종업원 수	50인 미만	312	84.8
	50인 이상	56	15.2

자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2.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용역 등을 판매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판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7%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79.3%로 다수의 표준사업장이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세부적으로는 업종에서는 제조업의 판매 경험이 24.6%로 비제조업(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에서는 수도권의 판매 경험이 25.7%로 비수도권(1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증연도에서는 2020년 이전에서 판매 경험이 24.1%로 2021년 이후(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50억 이상~100억 미만의 판매 경험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억 이상~50억 미만(21.2%), 100억 이상(20.0%), 10억 미만(16.7%)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에서는 50인 미만의 판매 경험이 21.8%로 50인 이상(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종합		20.7	79.3
유형	제조업	24.6	75.4
	비제조업	12.9	87.1
소재지	수도권	25.7	74.3
	비수도권	16.4	83.6
인증연도	2020년 이전	24.1	75.9
	2021년 이후	14.7	85.3
매출액	10억 미만	16.7	83.3
	10억~50억 미만	21.2	78.8
	50억~100억 미만	28.3	71.7
	100억 이상	20.0	80.0
종업원 수	50인 미만	21.8	78.2
	50인 이상	14.3	85.7

자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3. 우선구매제도의 경영 도움 정도

우선구매제도의 경영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5.8%),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7.9%),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3.9%),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9.0%) 순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세부적으로는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5.4%),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20.9%),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5.2%),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6.6%)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6.6%),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13.7%),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2.1%),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1.3%)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에서는 수도권은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29.9%),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6.2%),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5.0%),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8.4%)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1.9%),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9.4%),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2.9%),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9.5%)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에서는 2020년 이전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1.1%),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7.7%),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4.2%),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

다’(11.2%)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이후에서는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29.4%),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8.4%),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3.2%),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5.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10억 미만은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7.2%),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3.2%),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0.5%),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9.6%) 순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이상~50억 미만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8.1%),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7.1%),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3.0%),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7.5%) 순으로 나타났으며, 50억 이상~100억 미만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가 각각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2.6%),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20.8%),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7.5%)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억 이상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23.6%), ‘경영에 도

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0.0%),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6.4%),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12.7%)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에서는 50인 미만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6.9%),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7.6%),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15.1%),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7.7%) 순으로 나타났으나, 50인 이상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각각 19.6%),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16.1%),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7.1%)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구매 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6.3%),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25.0%),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19.7%) 순으로 나타났으나, 경험이 없다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25.7%), '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16.1%),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11.3%),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우선구매제도의 경영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종합		33.4	9.0	13.9	17.9	25.8
유형	제조업	32.0	6.6	15.2	20.9	25.4
	비제조업	36.3	13.7	11.3	12.1	26.6
소재지	수도권	29.9	8.4	15.0	16.2	30.5
	비수도권	36.3	9.5	12.9	19.4	21.9
인증연도	2020년 이전	35.8	11.2	14.2	17.7	21.1
	2021년 이후	29.4	5.1	13.2	18.4	33.8
매출액	10억 미만	39.5	9.6	10.5	13.2	27.2
	10억~50억 미만	34.2	7.5	13.0	17.1	28.1
	50억~100억 미만	24.5	7.5	20.8	24.5	22.6
	100억 이상	27.3	12.7	16.4	23.6	20.0
종업원 수	50인 미만	32.7	7.7	15.1	17.6	26.9
	50인 이상	37.5	16.1	7.1	19.6	19.6
우선구매 경험	경험 있음	19.7	0.0	28.9	25.0	26.3
	경험 없음	37.0	11.3	9.9	16.1	25.7

주: ①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미비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큰 도움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
③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움이 된다
④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⑤경영에 도움되어 공공기관 대상 매출을 확대하고 싶으나 어렵다
자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4. 우선구매제도의 자생력 확보 도움 정도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재무 상태 호전 및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37.8%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2.2%로 나타나 우선구매제도가 다수의 표준사업장에게 재무 상태 호전 및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세부적으로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1.4%로 비제조업(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에서는 수도

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3.1%로 비수도권(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증연도에서는 2021년 이후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9.0%로 2020년 이전(37.1%)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50억 이상~100억 미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억 이상~50억 미만(39.7%), 100억 이상(38.2%), 10억 미만(31.6%)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에서는 50인 미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9.7%로 50인 이상(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선구매 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다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1.1%로 경험이 없다(2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5〉 우선구매제도의 재무 상태 호전 및 자생력 확보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도움됨	도움되지 않음
종합		37.8	62.2
유형	제조업	41.4	58.6
	비제조업	30.6	69.4
소재지	수도권	43.1	56.9
	비수도권	33.3	66.7
인증연도	2020년 이전	37.1	62.9
	2021년 이후	39.0	61.0
매출액	10억 미만	31.6	68.4
	10억~50억 미만	39.7	60.3
	50억~100억 미만	45.3	54.7
	100억 이상	38.2	61.8
종업원 수	50인 미만	39.7	60.3
	50인 이상	28.8	73.2
우선구매 경험	경험 있음	71.1	28.9
	경험 없음	29.1	70.9

자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5. 우선구매제도의 신규 고용창출 도움 정도

우선구매제도가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9.6%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

았다는 응답은 70.4%로 나타나 우선구매제도가 다수의 표준사업장의 신규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참조). 세부적으로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2.4%로 비제조업(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에서는 수도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9.9%로 비수도권(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증연도에서는 2020년 이전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1.0%로 2021년 이후(27.2%)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50억 이상~100억 미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억 이상~50억 미만(30.1%), 100억 이상(27.3%), 10억 미만(25.4%)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에서는 50인 미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1.4%로 50인 이상(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선구매 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다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52.6%로 경험이 없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6〉 우선구매제도의 신규 고용창출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도움됨	도움되지 않음
종합		29.6	70.4
유형	제조업	32.4	67.6
	비제조업	24.2	75.8
소재지	수도권	29.9	70.1
	비수도권	29.4	70.6
인증연도	2020년 이전	31.0	69.0
	2021년 이후	27.2	72.8
매출액	10억 미만	25.4	74.6
	10억~50억 미만	30.1	69.9
	50억~100억 미만	39.6	60.4
	100억 이상	27.3	72.7
종업원 수	50인 미만	31.4	68.6
	50인 이상	19.6	80.4
우선구매 경험	경험 있음	52.6	47.4
	경험 없음	23.6	76.4

자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6.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 고용안정 도움 정도

우선구매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37.0%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3.0%로 나타나 우선구매제도가 다수의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세부적으로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0.6%로 비제조업(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에서는 수도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7.7%로 비수도권(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증연도에서는 2021년 이후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9.0%로 2020년 이전(3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50억 이상~100억 미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억 이상~50억 미만(36.3%), 100억 이상(34.5%), 10억 미만(33.3%)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에서는 50인 미만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9.1%로 50인 이상(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선구매 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다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7.1%로 경험이 없다(2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7〉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 고용안정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도움됨	도움되지 않음
종합		37.0	63.0
유형	제조업	40.6	59.4
	비제조업	29.8	70.2
소재지	수도권	37.7	62.3
	비수도권	36.3	63.7
인증연도	2020년 이전	35.8	64.2
	2021년 이후	39.0	61.0
매출액	10억 미만	33.3	66.7
	10억~50억 미만	36.3	63.7
	50억~100억 미만	49.1	50.9
	100억 이상	34.5	65.5
종업원 수	50인 미만	39.1	60.9
	50인 이상	25.0	75.0
우선구매 경험	경험 있음	67.1	32.9
	경험 없음	29.1	70.9

자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준수율,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의 추세는 의무구매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의무구매비율이 상향된 첫 해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석에 활용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선구매비율은 2020년, 2023년 두 차례 상향됐는데, 2020년과 2023년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구매비율이 상향되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기관 유형에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이 유독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해당 기관 유형은 특별법인으로, 특별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수 자체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유독 적긴 하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이 20.0% 미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인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구매액과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을 도출하였고,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 랜덤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랜덤효과 모형 분석 결과 우선구매비율, 총구매액,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 유형에서는 준정부기관일수록 우선구매제도 준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표준사업장에 도움 정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표준사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경영이나 재무 상태 및 자생력 확보, 신규 고용 창출, 고용 유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표준사업장에서는 재무 상태 및 자생력 확보, 신규 고용 창출, 고용유지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는 표준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나 표준사업장에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분석에서 사용된 raw-data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전체 표준사업장의 현황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및 판매사이트인 위드플러스(http://www.withplus.or.kr) 에 구매실적을 등록한 표준사업장의 수는 2023년 기준으로 473개소로 전체 표준사업장 703개소 중 67.3%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된 raw-data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 4 장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효과성 분석

제1절 정량적 분석

본 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구매제도 및 우선구매비율향상이 표준사업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분석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패널 회귀 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패널 회귀 분석은 개체 간 차이, 시간에 따른 변화, 동적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우선구매실적자료는 개별 표준사업장이 앞서 언급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및 판매사이트인 위드플러스에 등록한 매출액 및 사업장 정보에 관한 데이터로 소재지, 표준사업장 유형, 각 연도별 총매출액,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물품·용역·공사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우선구매활용 여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해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 분석

먼저 우선구매제도가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분석 결과 우선구매 매출액과, 우선구매비율, 장애인근로자 수는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우선구매 매출액과 우선구매비율, 장애인근로자 수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표 4-1〉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성 분석(고정효과)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우선구매 매출액	0.0618372	0.011818	5.23	.000	0.038615	0.085059
우선구매비율	0.7120723	0.1417582	5.02	.000	0.433522	0.990623
장애인근로자 수	0.0056959	0.0026041	2.19	.029	0.000579	0.010813
업력	0.0218427	0.0201813	1.08	.280	-0.01781	0.061498
충청권	0.1702389	0.3976721	0.43	.669	-0.61118	0.951653
일반형	-0.0754146	0.2959773	-0.25	.799	-0.657	0.506172
_cons	19.8149	0.4376236	45.28	.000	18.95499	20.67482

주. 1) 매출액과 우선구매 매출액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음
2) 지역 준거변수: 강원 및 제주
3) 표준사업장 유형 준거변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다음으로 랜덤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분석 결과 우선구매 매출액, 우선구매비율, 장애인근로자 수, 업력, 표준사업장 업력이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우선구매 매출액과 우선구매비율, 장애인근

로자 수, 업력, 표준사업장 업력이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오래될수록, 표준사업장 업력이 오래될수록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표 4-2〉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성 분석(랜덤효과)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우선구매 매출액	0.080757	0.0097928	8.25	.000	0.061563	0.099951
우선구매비율	0.6819149	0.138275	4.93	.000	0.410901	0.952929
장애인근로자 수	0.009552	0.0015925	6.00	.000	0.006431	0.012673
업력	0.0433423	0.0070386	6.16	.000	0.029547	0.057138
표준사업장 업력	0.0501222	0.0188504	2.66	.008	0.013176	0.087068
수도권	0.3352526	0.255262	1.31	.189	-0.16505	0.835557
충청권	0.4201026	0.2925608	1.44	.151	-0.15331	0.993511
전라권	0.2184358	0.2815645	0.78	.438	-0.33342	0.770292
경상권	0.0746425	0.2633811	0.28	.777	-0.44157	0.59086
일반형	1.766701	1.138784	1.55	.121	-0.46528	3.998677
자회사형	1.365779	1.144945	1.19	.233	-0.87827	3.60983
_cons	16.73394	1.174778	14.24	.000	14.43141	19.03646

주. 1) 매출액과 우선구매 매출액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음
2) 지역 준거변수: 강원 및 제주
3) 표준사업장 유형 준거변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4-3>에 제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 p-value가 0.05 미만(p=.001)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앞서 고정효과 모형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우선구매 매출액, 우선구매비율,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표준사업장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표 4-3〉 우선구매제도의 매출액 증대 효과성 분석에 관한 Hausman검정 결과

	(b) 고정효과 모형	(B) 랜덤효과 모형	(b-B) Difference	sqrt (diag(V_b-V_B)) S.E.
우선구매 매출액	0.0618372	0.080757	-0.01892	0.006616
우선구매비율	0.7120723	0.6819149	0.030157	0.031232
장애인근로자 수	0.0056959	0.009552	-0.00386	0.002061
업력	0.0218427	0.0433423	-0.0215	0.018914
충청권	0.1702389	0.4201026	-0.24986	0.269353
일반형	-0.0754146	1.766701	-1.84212	.
Chi-sq	21.08			
Prob	.001			

2.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 근로자 증대 효과 분석

다음으로 우선구매제도가 표준사업장에 재직 중인 장애인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분석 결과 총매출액, 우선구매비율, 지지역이 충청권인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총매출액과 우선구매 매출액, 우선구매비율, 소재지가 충청권에서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소재지가 강원 및 제주에 비해 충청권일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한다.

〈표 4-4〉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고정효과)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총매출액	1.750601	0.80037	2.19	.029	0.177898	3.323304
우선구매 매출액	0.429075	0.212161	2.02	.044	0.012185	0.845965
우선구매비율	5.721015	2.53681	2.26	.025	0.736257	10.70577

〈표 4-4〉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고정효과) (계속)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업력	-0.02943	0.354238	-0.08	.934	-0.7255	0.666636
충청권	25.84186	6.871493	3.76	.000	12.33957	39.34414
일반형	-2.3449	5.188098	-0.45	.651	-12.5394	7.849566
_cons	-28.4669	17.64097	-1.61	.107	-63.1309	6.197111

주. 1) 매출액과 우선구매 매출액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음
2) 지역 준거변수: 강원 및 제주
3) 표준사업장 유형 준거변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다음으로 랜덤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 분석 결과 총매출액, 표준사업장 업력은 장애인근로자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은 장애인근로자 수에 부적(-)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총매출액과 표준사업장 업력은 양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력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매출액이 높을수록, 표준사업장 업력이 오래될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업력이 오래될수록 장애인근로자 수는 감소한다.

<표 4-5〉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랜덤효과)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총매출액	3.345841	0.621693	5.38	0.000	2.127345	4.564338
우선구매 매출액	0.156289	0.190351	0.82	0.412	-0.21679	0.52937
우선구매비율	4.80263	2.51196	1.91	0.056	-0.12072	9.725981
업력	-0.43996	0.150538	-2.92	0.003	-0.73501	-0.14491
표준사업장 업력	2.052486	0.403041	5.09	0.000	1.26254	2.842432
수도권	8.259151	5.574847	1.48	0.138	-2.66735	19.18565
충청권	10.40226	6.318741	1.65	0.100	-1.98224	22.78677

〈표 4-5〉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랜덤효과) (계속)

	Coef,	Std,.Err.	Z	P>|z|	95% Conf.	Interval
전라권	4.056695	6.154416	0.66	0.510	-8.00574	16.11913
경상권	6.865393	5.741834	1.2	0.232	-4.38839	18.11918
일반형	-29.5753	24.9093	-1.19	0.235	-78.3966	19.24604
자회사형	-12.7085	25.0374	-0.51	0.612	-61.781	36.36388
_cons	-45.4657	27.70456	-1.64	0.101	-99.7656	8.83428

주. 1) 매출액과 우선구매 매출액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음
2) 지역 준거변수: 강원 및 제주
3) 표준사업장 유형 준거변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4-6>에 제시하였다. Hausman 검정 결과 p-value가 0.05 미만(p=.00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앞서 고정효과 모형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총매출액, 우선구매 매출액, 우선구매비율, 지역이 강원 및 제주에 비해 충청권일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표 4-6〉 우선구매제도의 장애인근로자 증대 효과성 분석에 관한 Hausman검정 결과

	(b) 고정효과 모형	(B) 랜덤효과 모형	(b-B) Difference	sqrt (diag(V_b-V_B)) S.E.
총매출액	1.750601	3.345841	-1.59524	0.504072
우선구매 매출액	0.429075	0.156289	0.272786	0.093695
우선구매비율	5.721015	4.80263	0.918385	0.354207
업력	-0.02943	-0.43996	0.410525	0.32066
충청권	25.84186	10.40226	15.43959	2.700171
일반형	-2.3449	-29.5753	27.2304	.
Chi-sq	51.98			
Prob	.000			

제2절 정성적 분석

1. 조사개요

정석적 분석을 위해서 현재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5명으로 다음의 <표 4-7>과 같다.

〈표 4-7〉 표준사업장 담당자 의견조사 참여자

표시	성별	직급/직위	표준사업장 유형	주요 생산품
담당자 A	남성	대표이사	일반형	종이
담당자 B	여성	과장	일반형	샤워기 필터
담당자 C	남성	대표이사	일반형	의류
담당자 D	남성	대표이사	일반형	세탁
담당자 E	남성	대표이사	일반형	폴리프로필렌관

2. 분석결과

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활용 여부

먼저 표준사업장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우선구매제도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구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이제 저희 거를 하면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더라고요.(담당자 B)

우선구매제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담당자 C).

어떤 혜택이 아니라 기회를 먼저 주는 거니까. 필요한 곳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연결이 되는 게 기회인 셈이죠(담당자 D).

저희는 우선구매제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제품은 보통 직거래보다는 공사자재의 일부로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구매제도가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담당자 E).

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도움 정도

1) 매출 및 사업 안정성

우선구매제도의 도움 정도에 관하여 물어본 결과, 매출이나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안정적인 기대 매출로 인하여 사업 안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매출을 유지하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담당자 A).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주춤했었는데요. 여기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시기에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상당 부분 그게 일정 기간 같은 시기에 항상 구입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여기 더 오겠구나, 이렇게(담당자 B).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공공기관 매출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가점 부분도 있어요(담당자 C)

2)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채용 및 시설·장비 등의 개선, 장애인근로자의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해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자들은 응답하였다.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면 하다못해 애들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시설의 시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애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될거 같아요(담당자 A).

저희는 어차피 장애인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되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담당자 B).

저희는 분기마다 간담회 같은걸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던가 그런거는 다 들어주세요. 불편사항, 개선사항 같은거요. 그래서 복지 쪽에도 신경을 써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담당자 D).

3) 회사 홍보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 및 회사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홍보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이제 보다 이게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기념품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십니다. 때문에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담당자 C).

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점

1) 우선구매제도 홍보 확대 및 구매비율 상향

응답자들은 우선 요구사항으로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구매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의무가 뭔지도 몰라요(담당자 A).

> 회사입장에서는 좀 더 우선 양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면 저희도 좋죠(담당자 D).

> 우선구매의무에 대한 홍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주무관님들은 표준사업장인지, 장애인기업인지 이런거를 몰라요(담당자 E).

2)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이 간소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 행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자격증명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이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행정적으로 좀 약간 간소화가 좀 됐으면요.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것들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담당자 C).

3)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표준사업장 인증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인증을 병행해서 받은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준사업장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 그러니까 자기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도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버리는 거에요. 인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기업 실적도 되고, 중증장애인생삼품 생산시설 실적도 되고, 표준사업장 실적도 되는 그런 곳을 찾는거에요. 한 번에 다 되는 데를. 그런데 저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인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담당자 A).

제3절 소결

앞선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의 매출액 향상, 장애인근로자 수 증대 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표준사업장 2014년부터 도입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사업장과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적 우선구매제도의 유형과 법적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구매실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준수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raw-data를 활용하여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및 판매사이트인 위드플러스를 통해 누적된 표준사업장 관련 DB를 활용하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준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공단을 통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게 되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

선구매제도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우선구매비율은 0.3%였으나, 2020년 0.6%로 한차례 상향된 후, 2023년 0.8%로 다시 한차례 상향되었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와 유사한 법정 우선구매제도는 총 9종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혁신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신제품(NEP)', '장애예술인창작품' 등이다. 각각의 제도는 제도의 도입 취지, 소관부처, 근거 법령, 의무구매비율이 전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우선구매제도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3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AbilityOne Program이 있었다.

3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이행여부와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준수 요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9년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0.78%에서 2023년 1.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으로 봤을 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매비율 및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법인의 구매비율 및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총구매액별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봤을 때 총구매액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기관에서 구매비율 및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선구매제도별로 준수율을 비교해 본 결과,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준수율이 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은 66.1%로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준수율(79.2%)보다는 낮았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56.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우선구매비율과 총구매액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사업장 구매액과 기관 유형이 준정부기관인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에 관해 분석해 본 결과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8.9%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가 재무 상태 호전 및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37.8%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71.1%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29.6%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52.6%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7.0%로 나타났으나,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는 67.1%로 높게 나타났다. 즉,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반적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에 관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표준사업장의 매출액 증대 효과와 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 수의 증대에 관해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준사업장의 매출액 증대 효과에 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오래될수록, 표준사업장 업력이 오래될수록 표준사업장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근로자 수 증대 효과에 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우선구매비율이 높을수록, 소재지가 충청권일수록 장애인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관해 살펴보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 나타난 바를 뒷받침하듯 매출액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고용유지, 사업체 홍보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홍보 및 우선구매비율의 확대, 구비서류 등의 간소화,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은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인식에 관해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드플러스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표준사업장 703개소 중 67.3%인 473개소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로는 더 많은 표준사업장이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에서도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표준사업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제도의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제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관한 구매접근성을 개선하고 온라인 구매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관한 정보는 위드플러스를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제품의 세부 사항을 제

대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구매링크가 잘못된 상품이 있는가 하면, 품질인증이나 시험성적서와 같은 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 전반적으로 구매접근성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 구매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모든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에도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관한 카탈로그를 위드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탈로그가 다소 부실한 편이며,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제품별 상세 스펙 정보, 품질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 인증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납품 실적 및 구매자 후기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위드플러스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의 연계·연동이 필요하다. 현재 위드플러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링크를 통해서 자사쇼핑몰로 이동하여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체계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물품 대부분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위드플러스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정보·인증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매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활용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구매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구매 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담당자의 변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우선구매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위드플러스 플랫폼 사용법, 구매계획 수립 방법, 실적 관리 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 구매기관의 사례를 공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구매담당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매 프로세스별 세부 절차,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관련 법령 해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담당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구매담당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 ESG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구매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법적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어, 이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나 ESG 성과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ESG 성과 지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하고, 이를 기관의 ESG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구매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 장애인 자립 지원, 가족부양부담 경감 등 질적인 측면의 사회적 가치도 함께 제시하여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 종식(SDG 1, No poverty)',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불평등 감소(SDG 10, Reduced inequalities)',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SDG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등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의미도 부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 구매기관의 ESG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ESG 경영을 실천한 모범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9호 (2013.06.19).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시.

_____ 제2019-71호 (2019.12.3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_____ 제2022-136호 (2022.12.3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용노동부 (2024.04.30.).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23년 구매실적 및 '24년 구매계획.

기획재정부 (2024.04.02.).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보도자료.

김원호 (2018).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원호, 이금진 (2017).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이은영 (20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나운환 (2014). AA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재활복지,** 18(3), 1-21.

보건복지부 (2024.04.24.)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3년 구매실적 및 2024년 구매계획 공고(안).

박혜원, 전영환 (2016). **공단 고용지원사업 평가–유·무상지원사업 및 표준사업장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송창근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규명: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27(3), 69-86.

신현욱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성과 및 지역별 차이 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33(1), 31-53.

유병연 (2017).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찬호 (202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향후 과제 토론문.

이수용, 차정훈 (2021).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윤지, 김호진, 임예직, 조신영, 이지우, 최종철 (2024).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준우, 백강, 이성호, 설명환 (20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2024년 3월 업무바인더. 내부자료.

AbilityOne Commission (2022).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_____ (2024). U.S. AbilityOne Commission Report to the President.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정책연구 연차과제 2025-02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성 분석

발 행 일 2025년 7월 28일
발 행 인 김 호 진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 소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
전 화 (031) 728-7000
팩 스 (031) 728-7199
홈페이지 http://edi.kead.or.kr
전자우편 wona@kead.or.kr

*비매품